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주택법 등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공동주택관리 지원 적용범위 확대(안 제3조)
-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전체로 지원범위 확대

나.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·용적률 완화(안 제30조)
-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·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공동주택 관리법」,「주택법」, 「건축법」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다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[2017. 10. 16. ~ 11. 6]
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 없음
마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등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

-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지원범위를 20세대 이상에서 공동주택 전체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,
- 안 제33조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장수명 주택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「공동주택법」등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 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공동주택단지의 노후·불량시설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・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